

의안번호	2211341
의 퇴 인	이개호의원
회 답 일	2025. 9. 15.
추계번호	25B3681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3조 1,722억원, 2031년 23조 322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15조 5,166억원(연평균 23조 1,033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 (국 비) 57조 7,583억원(연평균 11조 5,517억원)

○ (지방비) 57조 7,583억원(연평균 11조 5,517억원)

- 본 추계는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일정 예산의 편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국가 등의 책무 (안 제3조), 지원 대상자의 범위 (안 제7조),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 (안 제8조)	231,722	231,386	231,045	230,693	230,322	1,155,166	231,033
국비(50%)	115,861	115,693	115,522	115,346	115,161	577,583	115,517
지방비(50%)	115,861	115,693	115,522	115,346	115,161	577,583	115,517

주: 1.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수(읍·면 거주자)는 총 인구의 18.7% 수준으로 가정
 2. 1인당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단가는 매년 240만원(월 20만원)으로 가정하며,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3.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은 50:50으로 가정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및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등에 필요한</u>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u>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u> 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5조(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u>농어촌기본소득 지원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u>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u>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u>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u>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u> 하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음(제2항)	의무·재량 규정
4	안 제7조(지원 대상자의 범위)	<u>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는 농어촌주민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함. 다만,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신청 기준일로부터 전입신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차등적으로 지원</u> 할 수 있음	의무·재량 규정
5	안 제8조(지원금액 및 지원시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어촌주민의 경제적 안정과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에게 연간 240만원 이상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u>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라 <u>농어촌기본소득 지원이 결정된 자에게 농어촌기본소득의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5조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u> 함. 다만, 농어촌기본소득의 지원이 정지된 기간에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하지 아니함(제2항)	의무규정
		<u>농어촌기본소득은 매월 현금으로 지원</u>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u>지역 화폐로도 지원</u> 할 수 있음(제3항)	의무·재량 규정
6	안 제10조(조사·질문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u>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자격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 제출을 요구</u> 할 수 있으며, <u>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신청자의 가택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u>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21조(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전 산망의 구축·운 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자의 결정, 지원 및 환수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를 전 자적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u>정보시스템(이하 “농어촌기본 소득 지원 전산망”이라 한다)</u> 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 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추계여부
1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 농어촌기본소득 비용추계
4	안 제7조(지원 대상자의 범위)		
5	안 제8조(지원금액 및 지 원시기)		
2	안 제5조(농어촌기본소 득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의 수립 등)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 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립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됨
3	안 제6조(실태조사 및 통 계작성 등)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실태조사와 관련한 구체적 인 계획을 알 수 없음
6	안 제10조(조사·질문 등)	—	• 미대상 －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는 현행 사업 실시와 병행하여 조사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현행 농어업경 영체 등록시 등록조사원 운영 및 관련 정보 관 리, 공익직불금(농어업경영체 등록자 대상) 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추계여부			
			련 현장점검 등의 사업 수행중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	2024	2025
			농업경영체등록 (6034-362)	27,825	28,979	29,459
			-등록조사원 운영	21,396	22,373	22,761
			-등록정보관리	4,803	4,980	5,072
			-정확도관리	1,626	1,626	1,626
			어업경영체 등록 (3440-362)	4,417	4,213	4,315
			-어업경영체 등록	4,117	4,213	4,315
			-어업법인 관리시 스템 구축	300	—	—
			직불제이행점검 (1071-301)	25,054	28,421	29,987
			-현장점검을 위한 조사원 채용·지원	16,637	19,173	19,813
			-드론 및 태블릿을 이용한 현장조사	909	1,006	1,066
			-준수사항 관련 업 무추진 및 부정수 급 방지	7,508	8,182	9,108
			농림축산식품통합 관리망(정보화) (7032-507)	4,195	3,519	3,186
			-농업경영체 지원 사업통합관리시스 템 구축 운영	2,824	2,795	1,36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7	안 제21조(농어촌기본소 득 지원 전산망의 구축· 운영)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전산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 구축 대상 시스템 규모 및 구축·운영·유지·관리 비용 등은 ISP를 거쳐야 파악이 가능하므로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추계여부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시스템 등 농업·어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중임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	2024	2025
			농업경영체등록(6034-362)	27,825	28,979	29,459
			-등록조사원 운영	21,396	22,373	22,761
			-등록정보관리	4,803	4,980	5,072
			-정확도관리	1,626	1,626	1,626
			어업경영체 등록(3440-362)	4,417	4,213	4,315
			-어업경영체 등록	4,117	4,213	4,315
			-어업법인 관리시스템 구축	300	—	—
			농림축산식품통합관리망(정보화)(7032-507)	4,195	3,519	3,186
			-농업경영체 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2,824	2,795	1,360
			수산정보화(정보화)(3462-505)	1,559	1,314	997
			-수산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919	1,314	997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	640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제8조제1항¹⁾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은 매월 20만원(연간 2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이때, 지급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 제7조²⁾는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농어촌주민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전국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으로 가정함
 - 제정안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농촌’ 지역은 ‘읍·면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어촌’에서 정한 하천·호수·바다와 인접하거나 어항배후지역인 ‘읍·면 지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2] 제정안에 따른 농어촌의 범위

지역 구분		정의
농어촌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u>농어촌</u> ”이란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3조제5호에 따른 <u>농촌</u> 과 「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u> 」 제3조제6호에 따른 <u>어촌</u> 을 말한다.
	농촌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3조제5호 5. “ <u>농촌</u>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u>가. 읍·면의 지역</u> <u>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u>
	어촌	「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u> 」 제3조제6호 6. “ <u>어촌</u> ”이란 <u>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u> 을 말한다. <u>가. 읍·면의 전 지역</u> <u>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u>

자료: 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1) 제8조(지원금액 및 지원시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경제적 안정과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에게 연간 240만원 이상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이 결정된 자에게 농어촌기본소득의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5조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한다. 다만, 농어촌기본소득의 지원이 정지된 기간에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농어촌기본소득은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 화폐로도 지원할 수 있다.
- 2) 제7조(지원 대상자의 범위) ①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는 농어촌주민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다만,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신청 기준일로부터 전입신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읍·면 지역 외의 농어촌 범위 및 농어촌 거주 주민 수에 대하여 통계자료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계대상 농어촌의 범위는 ‘읍·면 지역’으로 한정함
- 또한, 제정안은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전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대한 전입·전출 등 인구의 유입에 대한 통계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본 비용추계 대상에서 고려하지 않음

□ 본 추계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농어민기본소득의 총액(기준선)을 비용추계 결과에서 차감하지 않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 중이나, 총 지급액 및 지급대상(개인 또는 가구), 지급시기 등이 상이하여 추계에 필요한 자료 가공에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인 수당 지급현황은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 농어업인 수당 지급현황 참고

□ 정부는 2026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시범사업 대상지역, 예산액 등 사업의 내용·규모가 확정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는 해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고려하지 아니함

- 정부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24만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1,703억원을 편성함

□ 제정안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지원 중지 사유, 지원 자격 상실 사유, 환수 사유³⁾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제14조(지원의 중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농어촌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3.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 되는 날을 지원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의 자료가 부재하여 대상자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비용추계에서 고려하지 않음

-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중 농어촌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진출한 자, 국외 체류기간 60일 이상인 자 등은 추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이에 대해 예측하기 곤란하여 대상자 선별에 한계가 있음

□ 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산출

- 제정안에 따른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라 총인구 수 대비 읍·면부 인구 수의 평균 비율(18.7%)을 바탕으로 전망
 - 이때, 추계기간 동안 총인구 수 대비 읍·면부 인구 수의 평균 비율(18.7%)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4.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5.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5조(지원 자격 상실)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7조에 따른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16조(농어촌기본소득의 환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사유로 환수하는 때에는 지급한 지원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 받은 경우

2. 제14조에 따라 지원이 중지된 기간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농어촌기본소득이 잘못 지원된 경우

[표 3]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른 읍·면부 인구 현황: 2020~2024년

(단위: 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전국 총인구(A)	51,829,136	51,738,071	51,692,272	51,774,521	51,805,547	51,767,909
읍·면부 인구 (B=C+D)	9,763,833	9,718,290	9,605,378	9,667,471	9,738,940	9,698,782
-읍부(C)	5,113,052	5,183,834	5,098,892	5,131,418	5,207,049	5,146,849
-면부(D)	4,650,781	4,534,456	4,506,486	4,536,053	4,531,891	4,551,933
총인구 대비 읍·면부 인구 비율(E=B/A)	18.8%	18.8%	18.6%	18.7%	18.8%	18.7%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검색일: 2025.9.1.)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3&conn_path=I3>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서 발표된 총 인구 수에 18.7%를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자를 산출함

[표 4]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산출: 2027~2031년

(단위: 명)

	2027	2028	2029	2030	2031
총인구(A, 명)	51,534,551	51,459,877	51,384,052	51,305,713	51,223,269
총인구 대비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자 비율(B)	18.7%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 자(C=A×B, 명)	9,655,063	9,641,073	9,626,867	9,612,190	9,596,744

주: 최근 5년(2020~2024년)간 총인구 수 대비 읍·면부 인구 수의 평균 비율(18.7%)을 추계기간 동안 변동 없이 적용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및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단가

□ 1인당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단가는 매년 240만원(월 20만원)으로 가정

- 제정안은 연간 240만원 이상을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제정안에 규정된 연간 하한 금액인 240만원을 12개월로 균분(월 20만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이때, 지급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다. 분담률 등

□ 국비 및 지방비의 분담률은 50:50으로 가정함

- 제정안 제3조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분담률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비 및 지방비의 분담률을 50:50으로 가정함

라. 추계결과

- 추계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15조 5,166억원(연평균 23조 1,033억원)으로 추계됨
 - (국 비) 57조 7,583억원(연평균 11조 5,517억원)
 - (지방비) 57조 7,583억원(연평균 11조 5,517억원)

[표 5]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수 (A, 천명)	9,655	9,641	9,627	9,612	9,597	—	—
1인당 연간 지급액 (B, 백만원/명)	2.4	2.4	2.4	2.4	2.4	—	—
추가재정소요 (C=A×B, 억원)	231,722	231,386	231,045	230,693	230,322	1,155,166	231,033
국비 (D=C×50%)	115,861	115,693	115,522	115,346	115,161	577,583	115,517
지방비 (E=C×50%)	115,861	115,693	115,522	115,346	115,161	577,583	115,517

주: 1.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수(읍·면 거주자)는 총 인구의 18.7% 수준으로 가정
 2. 1인당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단가는 매년 240만원(월 20만원)으로 가정하며,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3.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은 50:50으로 가정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및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일정 예산의 편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수 및 지급단가 등 일정 요인을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향후 지급대상자 수, 지급단가, 수급 제외 사유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stone@assembly.go.kr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 농어업인 수당 지급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2025년 기준)

구분	지자체	지급 시작	지급대상	지급규모	지급방법
농업인 수당	경기도	'21~	농업인	'21년~: 농업인당 5만원/월 (60만원/년)	지역화폐
	강원도	'21~	농림어가	농가당 70만원/년	지역화폐
	충청북도	'22~	농가	'22년: 농가당 50만원/년 '23~: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충청남도	'20~	농업인	'20~'21년: 농가당 80만원/년 '22년~: 1인 농가 80만원/년, 2인 가구 이상 45만원/1인	지역화폐
	전라북도	'20~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전라남도	'20~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경상북도	'22~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경상남도	'22~	농가	농가당 30만원/년 (공동경영주 60만원/년)	지역화폐 또는 농협채움카드 (신용·체크카드)
	제주도	'22~	농업인	농업인당 40만원/년	지역화폐
	울산광역시	'23~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현금 지급
	광주광역시	'23~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세종특별자치시	'23~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인천광역시	'24~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현금 지급
	부산광역시	'25~	농가	농가당 60만원/년	현금 지급
어업인 수당	인천	'24	어가	어가당 60만원/년	현금, 지역화폐 (카드, 상품권 등)
	경기(화성시)	'23	어민	어민당 60만원/년	
	전라북도	'21	어가	어가당 60만원/년	
	전라남도	'20	어가	어가당 60만원/년	
	충청북도	'23	어가	어가당 60만원/년	
	충청남도	'20	어가	1인 어가 80만원/년, 2인 가구 이상 어가 45만원/1인	
	강원도	'21	어가	어가당 70만원/년	
	경상북도	'22	어가	가구당 60만원/년	
	경상남도	'22	어민	경영주당 30만원/년	
	울산	'24	어가	어가당 60만원/년	
	제주도	'22	어민	어민당 40만원/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취합)